

보도 참고자료

상호신용금고 구조조정 추진계획

- ◇ 부실 및 부실우려 금고는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3자매각 또는 퇴출 등으로 금년내에 정리
 - 부실금고를 인수(P&A) · 합병하는 우량금고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지원
- ◇ 정상영업이 가능한 금고에 대해서는 「저축은행」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건전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유도

1. 추진현황

□ 97말 이후 금년 9월말까지 79개 금고를 정리(인가취소 50개, 합병 19개, 계약이전 10개)

○ 금고의 공신력이 취약하고,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금고 전체의 수신은 5.7조원, 여신은 10.8조원이 감소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

(개, 조원)

	97말	98말	99말	00.9말	97말비 증감율
· 금고수	231	211	186	162	△29.9%
· 수 신	27.2	25.6	22.6	21.5	△21.0%
· 여 신	28.1	21.9	18.6	17.3	△38.4%

2. 구조조정 추진계획

가. 부실금고의 조속한 정리

- 예금전액이 보장되는 금년내에 부실 및 부실우려 금고를 정리
 - 금고에 대해 금감원의 현장점검이 10월말 완료되면, BIS 비율 1% 미만의 부실금고는 조속히 계약이전 또는 대출
 - BIS비율 6% 미만 금고중 부실우려 금고는 공적자금 지원을 통한 합병을 유도함으로써 추후의 공적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금고업계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
-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금대지급 및 자금지원용 소요로 추가적 공적자금 4.3조원을 적기에 투입
 - * BIS비율 1%미만(25개 예상)인 금고의 예금대지급 또는 계약이전자금지원(3조원)
 - * BIS비율 6% 미만(38개 예상)인 금고중 부실화되는 경우 예금 대지급, 부실우려 금고로 지정되는 경우 BIS비율 8% 제고에 필요한 자금의 2/3 수준 대출(1.3조원)

나. 정상적인 금고의 발전방향 모색

- 금고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, 일정규모이상의 금고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제 등 지배구조 개선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투명성을 제고(금고법 개정)
- 인수·합병 금고에 대한 지점·출장소 설치 허용, 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하여 대형화 유도(정책사항)

<자료작성 :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500-5360~2>

보 도 자 료

이 자료는 10월20일(조간)부터
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상호신용금고 구조조정 추진상황

주요내용

□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발표한 「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」(Blue Print)에 따라, 별첨과 같이 상호신용금고의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.

<주요내용>

- 금고 구조조정을 위한 BIS비율 현장점검 실시
- 부실우려금고를 합병하는 금고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
- 상호신용금고 명칭 변경 등 보완대책 추진

<별첨> : 상호신용금고 구조조정 추진상황

자료생산처 : 금융감독위원회 감독법규관설 제2금융권팀(전화 : 3771-5061-2)
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, 비은행검사1국

※ 금융감독위원회·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fsc.go.kr>과 www.fss.or.kr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

相互信用金庫 構造調整 推進狀況

2000. 10

**金融監督委員會
金融監督院**

I. 「제2단계 金融構造調整 추진계획」(Blue Print)에서 제시된 内容

<상호신용금고 구조조정>

- 2000.6월말 기준 BIS비율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하여 構造調整 추진
 - 기 실시(2000.8월 완료)한 書面點檢 결과, BIS비율이 6% 미만으로 나타난 금고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現場點檢을 실시중(10월 말까지 완료)
 - BIS비율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, 12월 말까지 조치완료
 - BIS비율이 1%미만인 금고는 공개매각을 통해 契約移轉, 매각관련시 즉시 退出
 - BIS비율이 1%~4%미만인 금고는 단계별 經營改善 措置를 부과하되,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매각추진 또는 퇴출
- 우량금고가 “不實憂慮金庫”를 인수하는 경우,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(10월말)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大型化 유도.
- 경영이 건실한 금고는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 정착·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既 발표된 「金庫發展方案」(2000.5)을 차질없이 추진

II. 推進狀況

1. 金庫 構造調整을 위한 BIS비율 點檢 실시

- 2000.6월 말기준 BIS비율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, BIS비율이 6% 미만으로 나타난 금고를 대상으로 BIS비율 現場點檢을 실시중
 - * 점검완료한 금고중 다수는 BIS비율이 4%를 초과하거나 중자 등을 통하여 자체 정상화가 가능할 전망
- BIS비율 現場點檢을 10.20까지 완료할 계획(당초계획은 10월말)
 - 아울러, 이미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經營改善計劃을 이행하고 있는 金庫중 이행기간이 10월까지 종료되는 금고에 대해서도 11월초까지 BIS비율 再點檢을 완료할 계획
- 현장점검 및 재점검 결과를 토대로
 - 11월초까지는 現段階에서 부실 또는 부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고의 金庫別 構造調整方向을 확정하고, 11월~12월중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

2. 不實憂慮金庫를 합병하는 金庫에 대한 支援方案 마련

가. 支援 根據

- 「예금자보호법」(제37조 및 제38조)에서는 不實憂慮金融機關을 인수·합병하는 者에게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

* 同 규정에 근거하여, 은행의 경우에는 “부실우려은행”을 합병한 우량은행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 사례(하나은행의 보람은행 합병시)가 있으나, 금고의 경우, 지금까지는 “부실금고”를 인수하는 우량금고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

나. 支援 必要性(기대효과)

□ 公的資金 절감

- 부실이 심화된 後, 퇴출시키거나 매각하는 것보다 부실이 심화되기 前에 인수·합병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공적자금 부담 경감

□ 金庫의 경쟁력 제고 및 地域金融 공백 방지

- 자금 지원시, 금고의 인수·합병을 촉발할 수 있으며, 인수·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금고의 경쟁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, 금고 퇴출에 따른 지역금융의 공백을 방지

□ 부실가능성이 있는 금고를 조기에 정상화하여 金庫의 構造調整을 신속히 완료

다. 支援方案

① 支援對象 金庫 : 부실우려금고를 인수·합병하는 優良金庫

□ 優良金庫의 기준

- 인수·합병 당시 BIS비율이 8%이상인 금고

□ 不實憂慮金庫의 기준

- 인수·합병 당시 BIS비율이 1%이상 ~ 6%미만인 금고로서 預金保險公社가 부실우려금고로 인정하는 금고

② 支援 規模 및 方式

□ 支援規模

- 피인수·합병되는 不實憂慮金庫의 BIS比率을 8%로 제고하는데 필요한 資金의 2/3수준을 지원
 - 나머지 1/3은 인수·합병금고에서 출자 등을 통해 부담

□ 支援方式

- 預保에서 우량금고에 一時 貸出(7년거치 일시상환 조건)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

③ 支援節次

□ 「예금자보호법」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

- 자금지원 신청시, 預保에서 해당금고에 대한 實查를 통해 자금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하고, 요건충족시 자금지원 규모 등을 결정

④ 事後管理

□ 자금을 지원받은 引受·合併金庫에 대해서는

- 합병인가시 “公的資金 지원 기간동안 BIS비율을 6%이상 유지할 것과, 미달시 自救計劃(출자, 배당제한 등)을 이행할 것”를 조건으로 인가하고
- 金監院에서 BIS비율 및 경영상황을 半期別로 철저히 점검 (필요시 예보와 공동점검)

라. 施行時期

□ 預金保險公社에서 세부시행기준 마련후, 2000년 11월부터 시행

3. 기타 補完對策 추진

가. 相互信用金庫 名稱 변경

- “상호신용금고”라는 명칭이 빈번한 금융사고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점을 감안, 금고의 公信力 提高 차원에서 “貯蓄銀行”으로 명칭변경을 추진
 -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상태이며, 11월중 國會에 제출할 예정

나. 經營支配構造 개선

- 합併 등 구조조정 추진으로 大型金庫가 출현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
 - 일정규모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社外理事 선임 및 監查委員會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
 - 금고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支配構造 改善을 추진(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에 반영)